

《공 사 설 명 서》

- 공 사 명 : 석관동340-328~337-21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(긴급)
- 위 치 : 석관동340-328~337-21외 1개소
- 목 적 :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 및 손상상태가 심한 하수암거의 물리적, 기능적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.
- 공사기간 : 착공일로 부터 100일간
- 공사개요
 - 사각형거 보수·보강 : □ 1.0×1.0~1.4×1.4m
 - 단면보수 : 528㎡
 - 철근노출 단면보수 : 143㎡
- 설계변경조건
 -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.
 - 가. 물량 변경이 있을 때
 - 나. 설계도서와 현장의 여건이 상이 할 때
 - 다.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라. 설계변경조건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유권해석에 준한다
- 공사기간
 -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하고 공사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- 가.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
 - 나.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
 - 다. 지장물의 철거 이설 등으로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
 - 라.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

○ 예정공정표

공 종	수량	03월	04월	05월	06월	07월	08월	비고
1. 치 핑 공	1식	—————						
2. 단면보수공	1식		—————					
3. 부 대 공	1식	—————						

○ 안전조치

- 가. 수급인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로 인한 민·형사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.
- 나.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다.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라. 토지의 붕괴, 낙반, 가설물이나 건축물의 파손 등 기타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,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○ 현장근로자 실명제 시행

- 가. 당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는 소속 회사명이 표시된 조끼착용 및 명찰을 패용토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고, 친절한 행동으로 구민고객으로부터 우리구 공사행정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건설현장 근로자 실명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○ 기타사항

- 가. 본 공사의 설계물량은 현장 여건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·감 될 수 있다.
- 나.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(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) 및 기능공(하수관거 부설 배관공)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- 다. 단,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,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